

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9-25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5.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1. 개정이유

- 행정규제의 조례규칙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무의 폐지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 도모

2. 주요골자

- 이 조례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농업계고등학교의 자영농과 장학생(이하 "장학생"이라 한다)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농촌자립 영농후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(안 제1조)
- 장학생은 졸업후 농촌에 정착하여 자립영농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하여야 한다. 다만, 농과계 전학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(안 제6조)
 - <삭제>

3. 참고사항

-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2조제1호
-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(1995. 2. 4, 조례 제6조)
- 행정규제의 조례규칙 재정비(기감 13131 - 339, '99. 3. 19)

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 본문중 “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5제1항”을 “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